

『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

(유희순 의원 대표발의)



고령군의회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!
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!
- 유희순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
『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제안이유는

고령군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들에게 현재 고령군에서
사용료 5천원 중 3천원을 고령상품권으로 환급하여
지역내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.
그러나 현재 조례에는 3천원권 권종에 대한 근거가
없어 1천원권으로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. 현재 상품권
발행 시 1장당 130원이 소요됩니다.

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 수요가 약 9만 6천 명 정도로 추정할 때, 1천원권의 경우 3,740만원 정도의 발행 금액이 소요되나, 3천원권의 경우 1,25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연간 2,49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에 따라

안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3천원권의 항목을 신설하여 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개정조례안은 “붙임내역” 과 같으며

자세한 내용은

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

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(안)
(유희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10.

발 의 자 : 유희순 · 이철호 · 김명국

· 성원환 · 김기창 · 성낙철의원

1. 개정이유

- 고령사랑상품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소액 상품권을 추가 제작.

2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(안 제4조)
 - 3천원권 항목 신설

3. 개정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조례 제 호

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
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3천원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) ① (생략)</p> <p>② 고령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, 카드형(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) 및 모바일로 하고,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3천원권</u></p> <p>3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[참고사항]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약칭 : 지역사랑상품권)

[시행 2023. 5. 16.] [법률 제19032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- 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, 권면금액,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